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12.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6. 12.

다. 상 정 일 자 : 2009. 6. 19.(제160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2008.9.22)에 따라 현행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등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및 기존 조례 내용의 일부를 보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일부개정함 (안 제2조)

- 법개정에 따라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를 종전 "납골" → "봉안"으로 개정

○ 제천시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을 종전 "제천시 화장장"에서 "제천시 영원한 쉼터"로 변경함 (안 제7조)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송학면 포전리 주민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0조)

○ 공설장사시설 관리·운영의 민간 위탁 조항 신설 (안 제12조)

- 공설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설 장사시설이 소재하는 마을에 위탁 운영 .
- 위탁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범위 확대(안 제16조)
- 사용자의 자격 범위를 제천시 관내 거주자에서 그의 가족(부모·배우자·자) 및 기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홍완식)

○ 제천시 장사시설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2008.9.22)에 따라 현행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등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제천시 공설장사시설 증개축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기존 조례 내용의 일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

○ 조례안 제 16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제천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외거주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우리시의 봉안당 시설규모 및 봉안 추이등을 감안하여 세부규칙등에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9조 사용료 관련 별표1의 봉안당 사용료중 부부단에 관한 사용료 규정은 금번 신설규정으로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여부 및 안 제9조 제3항의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 조례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중 제천시 공동(공설)묘지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와 본 조례안의 상호 관련성과 폐지 사유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답변자 :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 제천시 영원한 쉼터 리모델링 이후에 지금 화장시설 사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지? 제천시 관내자와 관외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양순경 의원)

: 많이 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관내자 보다는 관외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임.

○ 타시군을 보면 제천시 관내자보다 관외자 타시군 관내자 보다는 관외자가 더 비용이 더 사용료가 많고 관내자한테는 배려한 사용료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는 크게 차이없이 관내와 관외가 큰 차등 없이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양순경 의원)

: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을 보시면 관내자보다 관외자가 배정도로 차이가 있음. 15세 이상인 화장시에는 1구당 제천시 관내는 15만원이고 관외는 30만원으로 해서 거의 배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관외자에 대해서 저희보다 배보다도 더 많게 하는데가 지금 요즘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천지역의 인근의 연고라던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편의상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차등을 뒀을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료 수입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 제9조에 보면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봉안당 사용시 부부용봉안함 사용료는 최초 사용허가시 일괄 납부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는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기 바람.(이정임 의원)

: 부부용 봉안함은 입구가 한개로 되어 있음. 한개로 되어서 들어가면 2인용으로 봉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사용을 안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려고 했던 장소에 봉한할 수 없음.

부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부용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봉한할 때 부부용으로 계약이 되면 부부용으로 다해서 선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